

문서관리번호	정책-02-00-부패방지정책_202409_01
최종 수정일	2024.09
문서 소관부서	법무팀
문서 승인자	컴플라이언스 부서장

## 부패방지정책

---

## 목차

1. 부패방지에 대한 책임.....	3
2. 부패방지 목표 달성.....	3
3. 대상(주) 부패방지 기본 원칙.....	4
4. 부패방지 및 윤리적 기업문화에 대한 책임 수행.....	6
[별첨].....	7

## 1. 부패방지에 대한 책임

대상㈜는 '우리의 경영이념'인 인간존중, 고객만족, 사회공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윤리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천하고, 정도경영을 통하여 사회와 기업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게 경영하고 있습니다. 이에 본 정책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윤리적 기업문화를 형성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.

본 정책의 윤리적 기업문화 실행 및 부패방지에 대한 책임은 대상㈜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됩니다. 나아가 대상㈜는 사업, 제품, 서비스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고객, 주주, 임직원, 협력회사,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대상㈜는 아래와 같이 부패방지 목표 및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본원칙,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윤리경영 및 정도경영 정신을 구현하고자 합니다.

## 2. 부패방지 목표 달성

대상㈜는 윤리적 기업문화를 실천해 관련 법령과 사내 규정의 준수를 철저히 하여 사회 윤리에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이와 같은 윤리경영의 실천과 정도경영 준수를 통한 부패방지를 위하여 매년 전 임직원이 윤리경영의 핵심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실천 서약에 서명하고 있으며, 법무팀은 전담조직으로서 이를 점검하고 전 임직원 대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또한 감사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부패방지 활동에 대해 관리 감독을 수행하고, 대표이사 직속으로 경영개선실을 운영하여 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.

대상㈜는 다음과 같은 부패방지목표를 설정하고 각 목표를 담당하는 책임부서를 통해서 목표 달성 세부 계획을 실행하고 매년 ESG기획팀, 법무팀, 경영개선실 등 책임부서를 통해 각 목표 달성 현황을 검토하고 목표를 재설정합니다.

### 1) 전체

- ① 부패방지교육을 받은 전체 임직원 비율
  - 2025년 중장기 목표 100% 실시
- ② 윤리경영 준수를 위한 내부 정기 감사가 실시된 사업장 비율
  - 2025년 중장기 목표 100%

### 2) 반부패, 뇌물수수, 이해상충행위 금지

- ① 보고된 부정부패 건수(형사처벌 기준)
  - 2025년 중장기 목표 0건

### 3. 대상(주) 부패방지 기본 원칙

대상(주)은 우리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법규, 윤리, 사규 등 사회 규범을 준수하는 것은 기업 활동 상 필수불가결하며, 기업에게 당연히 기대되는 기업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. 본 정책은 대상(주)의 경영이념에 근거하여, 이 책임을 여기에 표현하는 것이며 대상(주)의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,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입니다.

#### 1) 용어의 정의

- '금품 등'이란 각종 유무형의 이익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.
  - 금전, 유가증권, 부동산, 물품, 숙박권, 회원권, 입장권, 할인권, 초대권, 관람권,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
  - 음식물·주류·골프 등의 접대·향응 또는 교통·숙박 등의 편의 제공
  - 채무 면제, 취업 제공, 이권(利權) 부여 등 그 밖의 유형·무형의 경제적 이익
- '공무원 등'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.
  -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선거관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중앙 행정기관(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 포함)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의 소속 임직원
  -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사업체(공기업, 공공기관 등) 임직원
  - 정무직 공무원 및 공직후보자
  - 정당 직원 및 간부
  - World Bank, 국제연합 등과 같은 국제기구 소속 임직원
  - 상기의 자를 대리하여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자
  - 기타 청탁금지법 등 법규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자
- '협력사'란 대리점, 중개인, 하청업체, 공급업체, 고객사 등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.
- '제3자대리인'란 에이전트, 컨설턴트, 전문 자문역(법률 및 세무 관련 고문 등) 등 회사의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.

#### 2)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

- 대상(주)의 모든 임직원은 특정인 또는 회사에 불공정하게 사업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거나 혜택이 제공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하거나 청탁 받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, 이를 약속 또는 제안하거나, 승인(이하 "제공")하지 않습니다. 또한 업무 상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등을 제공받지 않습니다. 특히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는 누구에게도 금품 등을 일절 제공하거나 받아는 안됩니다.
- 임직원은 공무원 등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른바 급행료/청탁금(facilitation payment)을 포함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.

- 임직원 상호 간에도 금품 등을 과도하게 제공하거나 받지 않아야 합니다.
  - 임직원은 사기, 돈세탁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자금의 출처 및 용도를 은닉하는 불법적인 자금 운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.
  - 대상(주)는 협력사 및 제3자대리인에게 본 정책에 따른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3) 이해상충행위 금지
-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,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.
  - 임직원은 대상(주)가 자신에게 부여한 지위 및 권한 또는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 및 비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거래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  -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 및 비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습니다.
  - 임직원은 대상(주)의 비밀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대상(주)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  -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 및 시설을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며, 사적으로 사용, 수익 또는 현금화하지 않습니다.
- 4) 기부 및 후원
- 대상(주)는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31조<sup>1</sup>를 엄격히 준수하며, 어떤 로비, 정치자금 및 선거자금도 제공하지 않습니다.
  - 자선적인 기부 및 후원은 내부 집행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됩니다.
- 5) 적절한 회계 처리·기록과 모니터링
- 대상(주)는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, 사규, 사회윤리 등 국내외 규범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본 정책을 준수하고, 회계장부를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게 기록·보관합니다.
  - 대상(주)는 적절한 회계장부 기록 및 보관 상황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어 자율 점검하고,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.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그 준수 절차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검토해, 필요에 따라서 개정·개선을 실시합니다.

---

<sup>1</sup> 정치자금법 [시행 2024.1.2.] [법률 제19923호, 2024.1.2, 일부 개정] 제31조(기부의 제한) ① 외국인, 국내·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. ② 누구든지 국내·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.

#### 4. 부패방지 및 윤리적 기업문화에 대한 책임 수행

대상㈜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등 부패방지 및 윤리적 기업문화 실현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대상㈜는 이를 통하여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하고, 현재의 또는 잠재적인 리스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.

##### 1)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

-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컴플라이언스 위반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,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마련합니다.
  - 회사와 유관한 규범의 준수를 위하여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을 확립합니다.
  - 컴플라이언스 최고책임자 및 전담조직, 컴플라이언스 제도와 규정을 마련합니다.
  - 정기적으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평가하여, 각 리스크에 적절한 통제 활동을 정비·운용합니다.
  - 컴플라이언스 활동 성과를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에게 보고합니다. 보고에는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, 대내외 주요 컴플라이언스 이슈, 컴플라이언스 활동의 계획과 결과, 신고 및 조사 절차, 개선사항 등 컴플라이언스 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.

##### 2) 부패방지교육

대상㈜는 윤리적 기업문화를 형성하고, 본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합니다.

##### 3) 부패행위 신고 프로세스

- 대상㈜는 임직원, 협력사, 대리인 등이 국내외 부패방지 규범이나 본 정책을 위반하는 등 부패행위의 혐의가 있는 경우 신고 채널을 통하여 신속하게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, 신고자 및 피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마련합니다.
- 신문고 제도: 윤리강령 준수 강화, 임직원들의 부정·비리 방지, 협력사와의 불공정 사례 예방 및 경영진에 대한 의사전달 창구로서 임직원, 고객, 협력사를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는 부패행위 사실을 발견하거나 부패행위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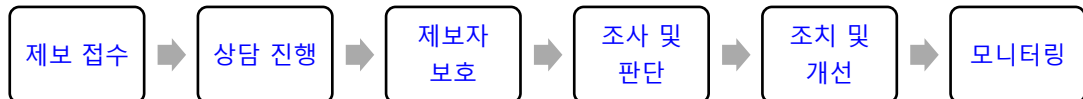
URL : <https://www.daesang.com/kr/esg/governance/write.jsp>

- 핫라인 제도: 대상㈜는 경영개선실 직통전화 또한 두고 있습니다. 누구나 회사로 신고 및 개선사항을 전달 수 있습니다.
- 신고자 보호 정책: 대상㈜는 신고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신고자 및 신고 내용을 신고시스템에 의해 철저하고 안전한 보안 체계로 보호하고 있으며, 신고에 대한 처리는 신고 내용에 대한

엄격한 비밀 준수를 서약한 제한된 인원에게 의해 수행됩니다.

4) 고충처리 프로세스

- 대상(주)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고충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신고 접수 시, 경영안전본부 고충처리센터를 통해 내부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구제 절차를 실행합니다.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부터 종결까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, 필요시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처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



[별첨]

1. 문건 요약

문서번호	정책-02-00-부패방지정책_202409_01		
제정일자	2022.06		
개정 내역	버전	개정 일자	주요 개정 내용
	2	2022.10	정책명 윤리경영정책으로 변경 및 윤리경영목표 수립
	3	2024.09	정책명 부패방지정책으로 변경 부패방지 기본 원칙 관련 용어 정의 추가 기부 및 후원 관련 내용 추가 부패행위 신고 절차 및 고충처리 절차 관련 내용 추가
소관부서	법무팀		